

<p>제2020-200호 2020년 10월 27일(화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<b>시 정 지 표</b>                  시민공감 감동시정                  균형있는 상생경제                  사람중심 나눔복지                  품격있는 문화관광                 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0-41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3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0-261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(소라면 봉두~상봉 시도25호선 도로개설공사) 4
- 여수시 공고 제2020-2634호 도로지정 공고(화양면 화동리 500) 7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

여수시 고시 제2020 - 419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 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 (변경일자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면적(㎡)	점용·사용 목 적	허가받은 자		변경사항(허가기간)	
				주 소	성 명	변경전	변경후
2012-008 (2020. 10. 27.)	여수시 신월동 1240-17번지 지선 공유수면	1,855 (직접160, 간접 1,695)	보트 및 요트 계류시설 운영	여수시 웅천남 8로 24, 102동 1504호 (웅천동 포레나)	명경은 외 1인(이재별)	2018. 10. 31. ~ 2020. 10. 30.	2020. 10. 31. ~ 2022. 10. 30.

2020. 10. 27.

여 수 시 장

## 보상계획 열람 공고

여수시에서 시행하는 「소라면 봉두~상봉 시도25호선 도로개설공사」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10. 27.

### 여 수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: 소라면 봉두~상봉 시도25호선 도로개설공사
- 사업시행자: 여수시장
- 사업규모: L=233m, B=8m
- 사업기간: 2020년 ~ 2021년

2. 열람공고기간: 2020. 10. 27. ~ 11. 10.(15일간)

3. 열람방법: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
여수시 홈페이지 주소: [www.yeosu.go.kr](http://www.yeosu.go.kr) 게재

4. 보상시기: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

5. 보상방법 및 절차(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)

- 보상은 현금보상이며,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.
- 보상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-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,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

추천 감정평가업자명: 해당사항 없음

토지 소재지	당초 지번	편입면적 (m <sup>2</sup> )	토지 소유자		소유자 확인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폰)	비고
			주소	성명			

※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-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.

6. 기 타

-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조(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)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기타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(☎061-659-4063)로 문의바랍니다.



## 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500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화양면 화동리	500	57	3	171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0. 27.

여 수 시 장